

의 결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 599호

의 안 명 「소형건설기계 면허 발급과정의 공정성 제고방안」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의 결 일 2020. 12. 7.

주 문

「소형건설기계 면허 발급과정의 공정성 제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2월 7일

위원장 전현희

위원 권태성

위원 김기표

위원 김태응

위원 김의환

위원 강재영

위원 정정미

위원 오완호

위원 이근동

위원 박홍규

위원 임혜자

위원 임성문

위원 방이엽

위원 손난주

[별 지]

국민의 삶을 위한 헌정기관
보다 나은 **국민권익위원회**

소형건설기계 면허 발급과정의 공정성 제고방안

2020. 12.



국민권익위원회

|| 목 차 ||

I. 추진배경	1
II. 일반현황	2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1.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근거 마련	6
2. 교육기관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9
3. 정기 적성 검사 시 자동차운전면허 정보 확인	11
4.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 시설 기준 명확화	13
5.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양식 마련	15
IV. 조치사항 및 기한	16

붙임 :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I. 추진배경

-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과제선정 : 국민콜110 상담민원, 국민신문고 민원 등

□ 추진배경

- 3톤 미만 지게차, 3톤 미만 굴착기 등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기술자격 취득 가능
 - ※ 최근 5년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34,494명('15년) → 39,060명('16년) → 41,966명('17년) → 49,102명('18년) → 58,037명('19년)
- 일부 교육기관에서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교육이수증을 발급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없으며 교육시간 미준수, 미자격 강사교육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또한 부재
 - ▶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 20~40만원 씩 돈을 받고 허위로 교육 이수증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음. 허위 발급으로 총 1억 원을 챙김. ('16. 5월 언론보도)
 - ▶ 000는 2013년 11월 경 면허 취득에 필요한 이론 및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학원장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교육이수증을 발급받고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17년 해당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 됨. ('20. 9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또한 소형건설기계조종사 정기 적성 검사 시 자동차운전면허 확인 규정이 없어, 음주운전 등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적성검사를 통과하는 사례 발생
 - ※ 3톤 미만 지게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또는 대형)가 필요하며, 건설기계조종사 정기 적성 검사는 10년 마다(65세 이상인 경우 5년) 받아야 함
- 이에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이수증 허위 발급을 방지하고 조종사 면허 발급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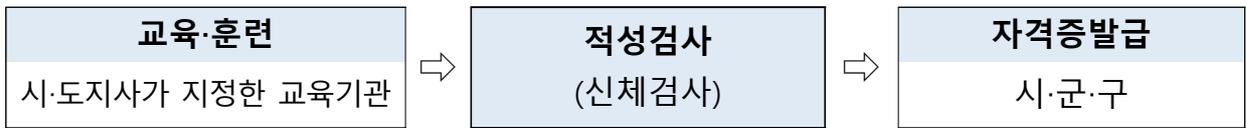
□ 추진경과

- 실태조사(~'20. 10월) ⇨ 개선방안 마련(~'20. 10월) ⇨ 관계기관 의견 조화 및 협의(~'20. 11월)

II. 일반현황

□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제도

- (종 류) 3톤 미만의 지게차, 3톤 미만의 굴착기,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5톤 미만의 불도저,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천공기 등
- (면허취득)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로 기술자격 취득 가능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④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제3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 7. 1.)으로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의 경우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실기시험 통과 필요

□ 최근 5년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 현황

- '19년 말 기준 가장 많이 취득한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3톤 미만 지게차 > 3톤 미만 굴착기 > 3톤 미만 타워크레인 등 순임

(단위 : 명, 출처 : '20. 9.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연도	5톤미만 불도저	5톤미만 로더	5톤미만 천공기	3톤미만 지게차	3톤미만 굴착기	3톤미만 타워크레인	공기 압축기	콘크리트 펌프	쇄석기	준설선
'15	19	1,055	355	24,149	7,923	555	225	0	213	25
'16	13	1,069	193	25,310	9,875	2,164	234	0	202	15
'17	6	1,321	164	26,373	11,357	2,311	222	0	212	20
'18	21	1,597	127	33,297	11,536	2,103	234	0	187	30
'19	18	1,677	149	39,397	14,186	2,049	347	0	214	31
합계	77	6,719	988	148,526	54,877	9,182	1,262	0	1,028	121

□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

- 시·도지사가 소형건설기계의 제작자,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건설기계조종 교습학원 등을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건설기계의 제작자**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중 **건설기계조종을 교습하는 학원**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기타 시·도지사가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시·도별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 지정 현황 »

(기준 : 2020. 9월, 출처 : '20. 9.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광역 자치단체	소형건설기계의 제작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건설기계조종사 교습학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기타	합계
서울	0	0	0	0	8	8
부산	0	0	6	2	0	8
대구	0	0	1	5	0	6
인천	0	0	7	1	0	8
광주	0	1	1	4	0	6
대전	0	0	2	0	1	3
울산	0	0	6	1	2	9
세종	0	0	0	0	0	0
경기	0	0	25	8	0	33
강원	9	2	4	3	0	18
충북	1	2	8	2	0	13
충남	0	0	10	3	5	18
전북	5	4	10	4	2	25
전남	0	4	8	1	1	14
경북	1	3	8	12	1	25
경남	0	1	10	1	1	13
제주	0	0	2	1	0	3
합계	16	17	108	48	21	210

□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

-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분되며, 소형건설기계 종류별로 12시간에서 20시간의 교육 이수 필요
- 이론교육은 건설기계기사·건설기계정비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대학의 기계공학계열학과 졸업자가 실시
- 조종실습은 해당 종목 또는 해당 기종 중 상위규격의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있는 강사가 실시해야 하며, 1일 4시간 초과 불가

◀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0) ▶

소형건설기계	교육 내용	시간
3톤 미만의 굴착기 3톤 미만의 로더 3톤 미만의 지게차	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2(이론)
	나. 유압 일반	2(이론)
	다.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2(이론)
	라. 조종실습	6(실습)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불도저 콘크리트펌프(이동식)	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2(이론)
	나. 유압 일반	2(이론)
	다.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2(이론)
	라. 조종실습	12(실습)
5톤 미만의 천공기 (트럭적재식 제외)	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2(이론)
	나. 유압 일반	2(이론)
	다.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2(이론)
	라. 조종실습	12(실습)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	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유압 및 작업장치	2(이론)
	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작업 안전	4(이론)
	다. 장비 취급 및 관리 요령	2(이론)
	라. 조종실습	12(실습)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가. 타워크레인 구조 및 기능일반	2(이론)
	나. 양중작업 일반	2(이론)
	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일반	4(이론)
	라. 조종실습	6(실습)

○ 교육기관은 교육 실시 후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이수증 발급

※ 매월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을 다음 날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 필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②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은 별표 20과 같다.

③ 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조종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매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최근 5년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교육이수 현황

○ '19년 말 기준 가장 많이 이수한 소형건설기계조종사 교육은 3톤 미만 지게차 > 3톤 미만 굴착기 > 3톤 미만 타워크레인 등 순임

(단위 : 명, 출처 : '20. 9.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연도	5톤미만 불도저	5톤미만 로더	5톤미만 천공기	3톤미만 지게차	3톤미만 굴착기	3톤미만 타워크레인	공기 압축기	콘크리트 펌프	쇄석기	준설선
'15	30	1,475	440	26,293	7,992	613	293	0	231	24
'16	13	1,322	221	27,188	9,741	2,382	263	1	219	21
'17	19	1,697	200	28,683	11,858	2,544	279	0	257	25
'18	27	2,053	161	35,885	12,305	2,225	352	1	222	32
'19	21	2,064	179	42,083	15,207	2,157	405	0	220	23
합계	110	8,611	1,201	160,132	57,103	9,921	1,592	2	1,149	125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근거 마련

□ 문제점

- 교습학원 등 일부 교육기관에서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준수하지 않고 교육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사례 지속 발생
- 교육이수증을 허위로 발급받고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 또한 종종 발생

< 관련 사례 >

- 지게차와 굴삭기와 같은 건설기계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이수증이 필요한데,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로 교육 이수증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음. 허위 이수증을 발급해 줄때마다 20~40만원씩 모두 1억원 챙김. (16.5. 언론보도, KBS "돈만주면 교육없이 건설기계 이수증 발급")
-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사면허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로 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음. 그러나 대부분 교육기관에서 학원비만 내고 법정 교육시간을 지키지 않은 채 소형 건설장비 교육 이수증을 교부해주고 있어 관리 부실로 인한 잠재적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소형건설기계 면허 학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함. (18. 8.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 000는 2013년 11월 경 ㉠㉠중장비학원에서 3톤미만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이론 및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학원장인 △△△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교육이수증을 발급받고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17년 해당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면허 취소됨. (20. 9.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강원)
- 부산 ●●구에 거주하는 택배 영업소 직원 2명은 본사로 부터 지게차 면허 취득 지시를 받았으나 교육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학원 운영자와 공모하여 교육을 이수 받지 않고 교육이수증을 허위로 발급받고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적발되어 취소 됨. (20. 9.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부산)

« 최근 5년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소 현황 »

(단위 : 명, 출처 : '20. 9.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연도	5톤미만 불도저	5톤미만 로더	5톤미만 천공기	3톤미만 지게차	3톤미만 굴착기	3톤미만 타워크레인	공기 압축기	콘크리트 펌프	쇄석기	준설선
'15	1	1	0	58	23	0	0	0	1	0
'16	0	2	1	503	59	5	0	0	0	0
'17	0	2	0	130	35	7	0	0	1	0
'18	1	9	0	131	28	4	2	0	1	2
'19	64	847	23	5,555	1,938	18	153	0	95	45
합계	66	861	24	6,377	2,083	34	155	0	98	47

※ '19년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적성검사 이수에 대한 불편 등으로 자진 반납 또는 취소 신청 다수 발생

○ 교육기관의 부실교육 등으로 인한 소형건설기계에 의한 잠재적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실제 소형건설기계로 인한 사고 지속 발생

< 관련 사례 >

- 2016년 10월 1일 13:20 경 포크레인(굴착기) 조종 중 보조하던 같은 회사 소속의 직원이 넘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게 함.
('20. 9.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부산)
- 2018년 12월 20일 굴착기 안전운전 위반으로 보행자 1명이 사망함.
('20. 9.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서울)
- 지게차 운전 중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하여 경상 6명, 물적 피해 9천 4백여만원 등 인적·물적 피해를 입힘.
('20. 9.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서울)
- ●●산업 직원 □□씨가 사업장 내에서 건설기계 조종 중 인명피해(경상 1명), 재산피해(4백 60만원 상당)를 입힘 ('20. 9.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경북)
- ◎◎구에 거주하는 ▷▷가 2015년 11월 굴착기 운행 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인적피해 10주, 물적피해 185만원 등 인적·물적 피해를 입힘.
('20. 9.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부산)
- 2016년 12월 27일 14:10 경 전남 ◇◇군에서 소형건설기계 중 하나인 로더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상 1명, 수리비 등 7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함.
('20. 9.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전남)

- 2020년 8월 13일경 ○○구 공동어시장 내에서 □□□가 운전하는 3톤미만 지게차가 후진하다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를 지게차 후미로 충격하여 전치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 야기함. (‘20. 9.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부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등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이수증발급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 부재
-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령상 관리·감독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공공안전 확보 및 소형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예방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교육기관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

□ 개선방안

- 부실 교육, 교육이수증 허위 발급 방지 등을 위해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에 대한 광역지자체 장의 관리·감독 근거 마련

※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을 지정하므로 시·도지사가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조항 신설

참고 사례(자동차운전면허학원 관련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交通安全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의 경우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경찰청이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하도록 규정

2 교육기관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문제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등에 소형건설기계별 교육 내용, 시간, 강사자격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에서 교육내용 부실, 교육시간 미준수, 미자격 강사교육 등 위반행위 지속 발생

< 관련 사례 >

- 지게차 교육 배우는게 없어요. 형식상 교육이라 해놓고 놓고 있어요. 3톤미만도 전문학원이 아닌 국가시험장에서 실기로 면허를 발급해야한다고 봅니다. **이건 학원 배불리기입니다.** (18. 10. 네이버 카페, 지게차 교육수료자 작성 글 중 발췌)
- 중장비운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을 함께 운영하는 자영업자임. 최근 3톤미만의 지게차 취득자가 급증한 상황임. 면허취득을 위해 학원이나 교육기관에서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발급 받아 시·군·구청에서 면허증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상당수 중장비운전학원이 불법과 편법을 통해 법이 정해진 교육 시간과 과정을 지키지 않고 이수증을 남발하는 행태를 저지르고 있음.**
(20. 6. 국민신문고 민원)
-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이 **교육시간에 비정상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이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당 교육기관에 대해 조사를 하고 행정처리가 필요함.**
(20. 7. 국민신문고 민원)

- 부실교육, 교육시간 미준수, 미자격 강사교육 등 위반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부재
 - 교육기관이 자진하여 지정 취소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교육기관 운영 정지, 등록 취소 등이 불가한 상황
- ※ 다만 교육이수증을 허위 발급한 자에 대한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규정되어 있음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 제26조제4항에 따른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에 관한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 실습장 지문시스템 미보유, 이론·실습시간 체크시스템 미비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만 가능하며, 지도사항 불이행 시 이행확보 수단 미비

(출처 : '20. 9.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연도	교육기관	위반사항	조치
2017년	○○종합기술학원	실습장 지문시스템 미보유 교육시간 관리용 전산시스템 미비	행정지도
2017년	△△대학교산학협력단	이수증 발급현황 미보고	행정지도
2017년	(주)◇◇중장비직원전문학교	이론·실습시간 체크시스템 미비	행정지도
2017년	◎◎직업전문학교	이수증 발급현황 미보고	행정지도
2018년	▲▲직업전문학교	자격요건 미달의 실습교육강사 교육	행정지도

□ 개선방안

-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교육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 신설

참고 사례(자동차운전면허학원 관련 '도로교통법')
<p>「도로교통법」 제113조(학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지방경찰청장은 학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 (생략) 6. 제103조제1항에 따른 강사의 배치기준 또는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7. 제103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을 위반하여 교육을 하거나 교육 사실을 거짓으로 증명한 경우 8. ~ 12. (생략)

※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의 경우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강사의 배치 기준 위반 또는 교육과정 등을 위반하여 교육하거나 교육 사실을 거짓으로 증명한 경우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 가능

□ 문제점

-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또는 대형)가 필요하므로 소지 여부 확인
- 그러나 조종사가 10년(65세 이상인 경우 5년) 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적성 검사 시에는 자동차운전면허 정보 확인 규정이 없어, 실제 소지여부 미확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동차운전면허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법 제29조에 따라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면허를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 2매
3.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취득 후 음주운전 등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적성검사를 통과하는 사례 발생
 -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은 불가한데 적성검사에 통과한 것으로 조종이 가능하다고 인식하여 불법 조종 양산 우려

□ 개선방안

- 건설기계조종사가 받아야 하는 정기 적성 검사 시 자동차운전면허 정보 확인 근거 마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 개정

개선(안) 예시
<p>「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법 제29조에 따라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면허를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 2매 3.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자동차운전면허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 문제점

-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장비, 기자재 등 시설 기준이나 설비에 대한 기준 미흡
 - 교육기관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지자체 담당자가 실사를 통해 실기 실습 등을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재량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
- 자동차운전면허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기능교육장·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 시설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반면,
 -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시설 기준이 없어 교육기관 지정 및 신청에 있어 불편 초래

□ 개선방안

-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장비 등 시설 기준 등을 명확하게 마련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교육기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마련

참고 사례(자동차운전면허학원 관련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5] 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제63조 제1항 및 제67조제2항 관련)

1. 강의실

- 가. 학과교육 강의실의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1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나.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지식과 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관한 강의를 위하여 필요한 책상·의자와 각종 보충교재를 갖추어 것

2. 사무실: 사무실에는 교육생이 제출한 서류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와 휴게실을 설치할 것

3. **화장실 및 급수시설:**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 및 급수 시설을 갖추되, 급수시설의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4.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및 조명시설:** 보건위생상 적절한 채광시설, 환기 시설 및 냉난방시설을 갖추되, 야간교육을 하는 경우 그 조명시설은 책상면과 칠판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5.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 것

6. **휴게실 및 양호실:** 교육생 정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사무실 안의 휴게실 외에 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실과 면적이 7제곱미터(전문학원의 경우에는 16.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응급처치시설이 포함된 양호실을 갖추 것

7. 기능교육장

가. 면적이 2,300제곱미터 이상(전문학원의 경우에는 6,600제곱미터 이상)인 기능교육장을 갖추 것. 다만, 기능교육장을 2층으로 설치하는 경우 전체 면적 중 1층에 확보하여야 하는 부지의 면적은 2,300제곱미터(제1종 대형면허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4,1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상·하 연결차로의 너비를 7미터(상·하 연결차로를 분리할 경우에는 각각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교육 외의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것

- 1) 제1종 대형면허 교육: 8,250제곱미터(전문학원의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
- 2)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 1,000제곱미터 이상
- 3) 소형견인차면허 및 구난차면허 교육: 2,330제곱미터 이상
- 4) 대형견인차면허 교육: 1,610제곱미터 이상

다. 기능교육장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가목에 해당하는 기능교육장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너비가 3미터 이상인 1개 이상의 차로를 설치할 것
- 2) 10~15센티미터 너비의 중앙선 또는 차선을 표시하고, 도로 중앙으로부터 3미터 되는 지점에 10~15센티미터 너비의 길가장자리선을 설치할 것
- 3) 연석은 길가장자리선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간격으로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너비 1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라. 기능교육장 안에는 기능시험코스 등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 및 조경시설 외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8. ~ 13. (생략)

5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양식 마련

□ 문제점

-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및 구비 서류에 대한 법정 양식 부재
 - 교육기관 지정 신청 시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지자체에서 보완을 요청하는 등 행정 비효율 초래
-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정 양식이 없다보니 교육기관 지정 요청 서식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사례도 발생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지정사항변경신고서

(전주시 자체 서식)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input type="checkbox"/> 지정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지정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장위치				
변경내용 (변경신고의 경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시설의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명단(자격 관련 서류 포함) 1부. 5. 건설기계 소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 시에 한정) 1부.			수수료 없음

□ 개선방안

-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법정 양식 마련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양식 마련

IV. 조치사항 및 기한

□ 세부과제별 조치사항

연 번	과 제 명	조 치 사 항	소관기관
1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 교육, 교육이수증 허위 발급 방지 등을 위해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에 대한 광역 지자체 장의 관리·감독 근거 마련 ⇨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조항 신설 	국토교통부
2	교육기관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교육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 신설 	
3	정기 적성 검사 시 자동차운전면허 정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조종사가 받아야 하는 정기 적성 검사 시 자동차운전면허 정보 확인 근거 마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 검사) 개정 	
4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 시설 기준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장비 등 시설 기준 등을 명확하게 마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교육기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마련 	
5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양식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법정 양식 마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양식 마련 	

□ 조치기한 : '21. 12월

- ▷ 귀하께서는 3톤 미만의 지게차 등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은 실기시험 없이 교육과정 이수 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① 알고 있었다	38.6%
② 모르고 있었다	61.4%

- ▷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에서 교육시간이나 교육내용 등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준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① 들어본 적 있다	29.5%
② 들어본 적 없다	70.5%

- ▷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에서 허위로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준다는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어보셨나요?

① 언론	23.1%
② 지인	42.3%
③ 인터넷	26.9%
④ 직접경험	7.7%
⑤ 기타	0%

- ▷ 현재는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 관리·감독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69.3%
② 다소 필요하다	19.3%
③ 거의 필요하지 않다	9.1%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1.1%
⑤ 잘 모르겠다	1.1%

- ▷ 현재는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에서 교육기간 미준수, 미자격 강사교육 등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현재는 행정지도만 가능한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운영 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72.7%
② 다소 필요하다	22.7%
③ 거의 필요하지 않다	3.4%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1.1%
⑤ 잘 모르겠다	0%

▷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과 관련 제도개선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 소형건설기계 면허를 발급할 때 교육기관에 대해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허위로 교육이수증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고 허위로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면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3톤 미만 소형일지라도 건설기계 조종은 현장에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규칙과 통제, 관리 감독이 없으면 이를 악용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꼭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한 근로환경 및 사고 방지를 위해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며 허술하게 면허를 발급하는 사례는 사라져야 합니다. 세금 낭비 및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 모든 영역에서의 안전문화와 인식확립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지도·감독과 함께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예비 지게차 운전자에게 면허를 준다는 뜻은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며 돌발 상황에 적절할 대처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면허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산업재해 예방에서 필수적입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소한의 정상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관리감독 규정을 만들고 여러 위반행위들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합니다.
- 소형건설기계 면허는 인터넷만 뒤져봐도 그냥 돈 주고 따는 형식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면허는 추후에 사고로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운전 면허처럼 실기 및 필기 교육 및 시험을 통한 이수자만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형건설기계조종사 교육을 유료 한 후 실기시험을 통해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전을 위해서 실기시험과 보수교육을 꾸준히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소형이라 하더라도 대인 대물 사고가 발생할 요지가 상당합니다. 1회성 교육이 아닌 보충교육을 통한 안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 말이 소형이지 무거운 중장비 건설기계입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많이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본입니다.

2020. 12. 8.

국 민 권 의 위 원



ACRC